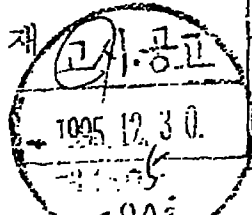


" 세계화의 주역 바로 당신입니다 "

##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02) 731-6386.6786 /전송 731-6790

문서번호	주기58511-2431	취급	서울특별시	
시행일자	1995. 12. 30	보존		
	(제 1 안)	주택공공장	전결	영정
수신	내부결재	주택기획과장	영정	법무담당관 심사필
참조		주택사업계장	영정	
		기안	이유역	협조



제 목 봉천지구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도시개발공사 진일610-514('95.1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부터 봉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및 동법시행령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사업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승인 내역

구분	사업승인내역	기타
대지면적 (㎡)	11,691.50	
건축면적 (㎡)	3,840.14	
연면적 (㎡)	43,110.20	
건폐율 (%)	32.85	
용적율 (%)	256.21	
사업비(천원)	25,640,825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 404세대 15평형 166세대 18평형 238세대	
사업기간	1996. 4 ~ 1998. 4	

첨 부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1 부

-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1 부
- 3. 사업계획 승인조건 1 부
- 4. 관련부서 협의사항 1 부
- 5. 고시(안) 1 부
- 6.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 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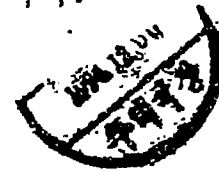
(제 2 안)

수 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참 조 설계처장  
 제 목 봉천지구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보

---

- 1. 도시개발공사 전일610-514('95.12.4)호와 관련입니다.
- 2. 위 대호로 귀 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봉천 택지개발지구내 1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하니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 첨 부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1 부
  -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1 부
  - 3. 사업계획 승인조건 1 부
  - 4. 관련부서 협의사항 1 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제 3 안)

수 신 총무처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관보게재 의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봉천 택지개발지구내 1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 부 고시(안) 2 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제 4 안)

수 신 공보관  
참 조 공보1담당관  
제 목 시보게재 의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봉천 택지개발지구내 1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 부 고시(안) 2 부. 끝.

주 택 관 장



(제 5 안)

수 신 받는곳 참조  
제 목 봉천지구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통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봉천 택지개발지구 1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1 부.



서 울 특 별 시 장

받는곳;가정복지과장, 연료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 도시경관과장, 도시개발과장, 도로계획과장, 주차계획담당관, 하수처리과장, 비상계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부장), 청소사업본부장(사업부장), 관악소방서장(방호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93.7.8>

<input type="checkbox"/> 주택건설 <input type="checkbox"/> 대지조성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승인서		① 승인번호		
사업주체	② 상 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③ 지청등록번호	218-82-00136	
	④ 대 표 자	사장 김 진 욱		⑤ 영업소소재지	성동구 성수1가 685-20	
설 계 자	⑥ 성 명	민 현 식		⑦ 자 격	건축사	
	⑧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1-115				
공 사 시 공 자	⑨ 성 명			⑩ 자 격		
	⑪ 주 소					
사업계획	⑫ 사업위치	관악구 봉천동 181-1 개발사업지구 1단지		⑬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사업내용	⑭ 대 지 면 적	⑮ 건 축 연면적(㎡)	16. 주택 형 별	17. 규 모	18. 사업비 (천원)
		11,691.5 ㎡	43,110.20	아파트	8개동 404세대	25,640,825
	사업기간	19. 착 공 예 정 일 자		20. 사 용 검 사 예 정 일 자		
1996. 4		1998. 4				
승인내역	따로붙임					
<p>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1995 년 12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장 인</p>						

## 봉천지구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1. 사업명 : 봉천지구 1단지 주택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20 김진욱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단지
4.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분	사업승인내역	기타
대지면적 (㎡)	11,691.50	
건축면적 (㎡)	3,840.14	
연면적 (㎡)	43,110.20	
건폐율 (%)	32.85	
용적율 (%)	256.21	
사업비(천원)	25,640,825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 404세대 15평형 166세대 18평형 238세대	
사업기간	1996. 4 ~ 199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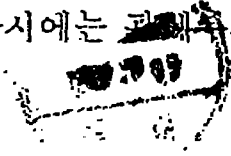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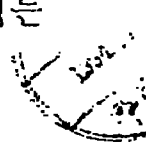
# 사업계획 승인조건

## <일반조건>

1. 건물의 지진 등에 관한 구조안전을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안전을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시행할 것.
2. 단지내 수도배관 재료는 내식성자재(시멘트 라이닝, 닥타일주철관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계획을 사업착공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을 철거, 폐쇄 및 폐전조치하고, 철거자재는 전량 반납할 것
3.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 배관재료는 건설부에서 고시한(건설부 고시 제1993-350호, '93.9.20) 배관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저수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5조의 규정 및 총리령제463호인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적합하게 하고, 단전·단수시의 급수를 대비하여 인입관로상에 개폐 조절밸브를 설치하고, 아래의 비상발전설비와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할 것.
  - 비상발전기 등 전력공급설비
  - 자체 동력을 겸비한 양수펌프 및 비상급수대와 그 연결용 호스를 각 단지별 각2조
5.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거 착공전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이행하고, 공사시행시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입구에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살수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6. 터파기공사 파일작업시 및 폭약사용시 저진동, 저소음 장비, 폭약을 사용할 것이며, 공사폐자재의 무단 소각행위를 금할 것.
7. 하수시설은 사업계획 설계도서에 첨부된 배수처리계획에 의거 시행하되, 특히 우·오수관 직경 250mm이상에 사용하는 자재는 V·R관이나 소켓고무링 홈관(2종)으로 시공토록 하고, 원형 맨홀뚜껑은 차도·인도에 관계없이 주철재를 사용하며 빗물받이는 스틸그레이팅으로 사용할 것.



8. 하수시설에 대하여 주요 공정별로 시공 전·중·후 사진촬영하고, 사용검사전 우·오수관 내부검사 실시(CCTV 촬영)하여 사용검사시 촬영한 테이프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이며, 공공시설 및 해당토지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귀속시킬 것.
9. 소방시설은 국가검정품으로 소방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사용검사 동의를 받은 후 사용 할 것이며, 기타 방화관계 제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연결관리법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 단지별로 피난기구(공기매트)를 확보할 것이며, 공사착공이후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등 진화장구를 비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판전을 기할 것.
10. 관리동에는 별도의 난방시설을 하여 자체 난방이 가능토록 하고, 관리사무소에는 탕비실을 설치할 것.
11. 단지조성 공사로 인한 시설물(도로·하수)파손시는 원인자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토록 할 것.
12. 단지내에 설치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 관리하도록 할 것.
13.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경광등, 주차안내판, 반사경 등을 설치할 것. 
14. 보육시설내 유희실에서 세면실로 직접 출입하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세면실 출입문은 아동들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문으로 설치할 것이며, 사무실에서도 아동들의 동정을 살필 수 있도록 사무실 벽면을 처리할 것.
15. 주택단지 면적은 개발계획도에 맞도록 시공 하므로써, 향후 면적정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입주민의 소유가 아닌 분양시설에 따른 지분토지 경계에 경계석 또는 식수등을 하여 물리적으로 구획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6. 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T·V시청 장애발생시, 사업주체 부담으로 T·V 난시청을 해소토록하는등 사전대책을 강구할 것.

17. 기존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철폐(특히 세입자) 사전 이해·설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18.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시 부여된 조건을 준수할 것.
19. 공사시행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0. 자재는 주택자재 생산등록업자의 검사합격 K.S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사용검사 신청시 사용자재 생산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이며 창호제품의 경우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규격제품을 사용토록 할 것.
21. 공사장 주변에는 가설울타리 등 환경정비시설과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진입로주변 공사차량 통행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원을 상주 시킬 것.
23. 하절기 공사시 붕괴 및 우수처리 대책을 수립할 것.
24. 관계부서에 착공신고 및 중간검사 필한후(단열제외)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증에도 관계부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시에는 ~~관계부서~~  별도로 사용검사를 받을것.
25. 본 공사로 인하여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 파괴 또는 인명피해등의 발생시는 사업주체 부담으로 조치할것. 
26. 건축법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18조 내지 제21조 및 제22조 내지 제24조, 종합유선방송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12조 내지 제16조 및 구내통신설비등의설치방법(정보통신부고시 제1994-18호) 등 관계법규에 의거 신축되는 건물에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용 구내 전송선로 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7. 설계도서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변경 인가후 시공할것.




28. 아파트 단지이름은 아름답고 지역특성에 맞는 이름을 사용토록 할 것.
29. 신청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작업시간을 제한할것.  
 하 절 기 : 파일항타 및 굴토공사 18:00 ~ 익일 08:00  
 토 사 운 반 18:00 ~ 익일 08:00  
 동 절 기 : 파일항타 및 굴토공사 17:00 ~ 익일 08:30  
 토 사 운 반 18:00 ~ 익일 08:30
30. 아파트 내부구조, 벽체 제거 등 변경 불가함을 관리규약 및 계약서에 명시할 것.
31. 향후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에 의거 최초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용검사 신청서에 장기 수선계획(특별수선충당금 내역 포함)을 사용검사 신청도서에 포함하여 사용검사 신청할 것.
32. 공사현황 및 사업주체, 공사시공자, 감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주택건설 공사 현황표지판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설치하고,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 설계자, 시공회사, 감리회사,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일자는 사용검사후 기재), 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할것.
33. 공사착공전에 굴토부분을 감리할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기술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여 보고하고 감리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감리자의 주택감리등은 건설교통부훈령 제123호의 주택의건설공급및관리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것.
34. 기타 사업계획승인전 시행된 각종 건축계획심의(도시경관심의,기술심의) 조건 부여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35. 하수처리과 협의결과 시정조치할 사항은 착공전까지 재협의하여 시공토록 할 것.  
(내용별첨)

< 실시계획 승인조건 >

1. 별첨 관련부서 협의결과 조치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착공전 관련부서와 재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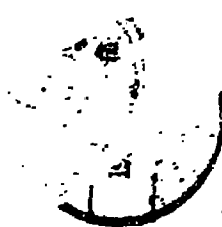
2. 상수도 관련사항은 봉천7가압장의 급수능력등 종합적인 검토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정된 내용을 이행토록 할 것.
3. 무상귀속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
4.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사업승인시 협의결과에 따라 납부 조치.
5. 공사시행시 봉천동 180번지 일대 현진입로를 이용할시 대형차량통행에 따른 교통 혼잡및 각종 사고방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할 것.
6. 공사시행시 관련 시방내용및 시설기준등에 따라 시행할 것.
7. 관악산 근린공원과 접하는 부분은 단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절개지 최소화 되도록 이부분을 단지내 조경면적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할 것.
8. 기타 기 개발계획승인시 부한 조건으로 한다.

## 관련부서 협의사항

부서명	협 의 내 용	비 고								
가정복지과	○ 의견없음									
연료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요청지역</th> <th style="width: 20%;">공급가능여부</th> <th style="width: 15%;">세대수</th> <th style="width: 4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봉천동 181번지 일대</td> <td>공급가능</td> <td>601세대</td> <td>당사 지역정압기 부지 할애시 공급 가능 분기지점 : 봉천중학교 옆</td> </tr> </tbody> </table>	요청지역	공급가능여부	세대수	비 고	봉천동 181번지 일대	공급가능	601세대	당사 지역정압기 부지 할애시 공급 가능 분기지점 : 봉천중학교 옆	반영
요청지역	공급가능여부	세대수	비 고							
봉천동 181번지 일대	공급가능	601세대	당사 지역정압기 부지 할애시 공급 가능 분기지점 : 봉천중학교 옆							
공원과	○ 의견없음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개발시 경계부에 과도한 절개지 발생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세부적인 절개지 단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임.</li> <li>○ 단지내부의 조경계획은 관할자치구 관련법규(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재확인하여 해당구청의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검토 요망</li> <li>○ 단지내 등간의 배치계획을 보면 산을 배경으로 한 주택건설로 조망권이 크게 차단되는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가능한 한 조망권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심도있게 검토 요망</li> <li>○ 단지와 인접한 인근의 공원내 산책로와 연결 가능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등산과 체력단련을 위한 통행로(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요망.</li> </ul>	반영 								
도로계획과	○ 의견없음									
상수도사업본부	○ 협의중	협의오는 데로 조건반영								

부 서 명	협 의 내 용	비 고
주차계획 담당관	<p>○ 도심외곽지역의 주택건설사업으로 현재 소득증가에 따른 차량보유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자가용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404세대에 349대 세대당 0.86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의 차량증가를 감안할때 세대당 1대분 이상의 주차장 확보가 요구되어 주차시설의 추가 확충 방안을 검토 할 것.</p> <p>○ 주차장 계획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공원 및 체육시설부지 등 공공용지와 가급적 인접 배치함으로써 장래 주차수용 증가시 지하주차장 등 주차장 추가 개발 확보가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임.</p> <p>○ 주차장시설기준에관한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시행령에 의거 전체 주차대수의 1%이상의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고</li> <li>-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대한 노외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법 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li> </ul> <p>○ 지하주차장의 높이는 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이어야 하고,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 곡선부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p> <p>○ 기타 주차장시설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및</p>	<p>반 영</p> <p>(추가확충 방안이 요구되나 현 단계내 주차여건및 추가제반사항&lt;공사비등&gt;을 고려하여 검토할것.)</p>

부 서 명	협 의 내 용	비 고
	<p>제6조를 준수하여 설치하기 바라며,</p> <p>○ 최근 각종 시설물의 공사 및 관리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앞으로 일반승용차의 차량이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장은 차량이 지정장소의 주차뿐만 아니라 주차를 위한 차량의 이동이 수반되므로 주차층의 하중조건을 정하중 및 동하중을 동시 고려하여 설계상 단위하중이 강화 되도록 하여 향후 주차장 이용시 주차장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p>	
하수처리과	<p>○ 아래사항을 착공전까지 재협의하여 시공토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관 수리점토시 단지 서측지역의 지구의 배수면적과 연계하여(택지개발 내부도로상의 우수관도 포함(수리점토할 것)</li> <li>- 우수관거중 MA.4 ~ 기존 BOX, MA.17, MB.20 ~ 기존 BOX, MB.6 ~ MB.8 구간의 유속을 3M/sec 이하로 조정할 것.</li> <li>- 집수정 규격을 빗물받이와 동일한 규격으로 할 것.</li> <li>- 우수맨홀(MB.6, MB.20) 및 오수맨홀(MA.7, MA.13, MA.14, MA.16, MA.22 ~ MA.24)의 단차가 60cm 이상으로 부관을 설치할 것.</li> <li>- 하처 58452-281('95. 3.24)호로 기 통보된 하수도 관거공사 시공지침에 의거 시공토록 할 것</li> </ul>	반 영
비상계획과	○ 군부대에 건축가능 여부를 협의중	협의오는 데로 조건부여
관악소방서	○ 건축허가 등의 서류에 첨부한 소방시설의 설계도서는 법정시설의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만 확인한 것이므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시공신고	반 영

부 서 명	협 의 내 용	비 고
	<p>시 세부계획도서에 의하여 재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소방시설을 국가 검정품으로 소방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준공 동의를 받은 후에 사용토록 협조</li> <li>○ 기타 방화관계등은 제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 적합하도록 협조 바람.</li> </ul> <p>첨 부 : 1) 건축허가에 따른 공한문 1 부. 2) 소방시설조사표 1 부.</p>	
관악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천택지개발지구 진입로와 봉천7-1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의 연결방안 검토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 공람공고중에 있는 봉천7-1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의 도시계획 입안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람.</li> </ul> <p>첨부 : 봉천7동1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도로 도시계획 입안 1부.</p>	반 영

# 관련부서 협의결과 조치계획

[봉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부 서 명	협 의 내 용	협 의 내 용
하수처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류식(우·오수)관의 수리계산 및 □1.8X1.6(관로번호1014), □2.5X2.0(관로번호1010)의 수리계산후 협의</li> <li>◦ 하처 58452-281(95.3.24)호로 통보한 하수도관거공사시공지침에 의거 공사시행 바람</li> <li>◦ 시설분담금 2.56억원을 납부계획 수립후 통보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협의</li> <li>◦ 공사시 이행</li> <li>◦ 실시계획 승인후 납부조치</li> </ul>
연 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가스 공급 가능 (당지역 정압기 부지 할애시 공급 가능, 분기지점 : 봉천중학교옆)</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처와 협의 별도부지 검토</li> </ul>
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시 우수유출율이 증가되지 않도록 침투형시설 설치 요망 (단지내 도로, 주차장등이 침투성 포장, 녹지공간 최대확보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계획시 검토</li> </ul>
도로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년도 도로굴착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할구청에 '96.1.10까지 신청 → 도설58717-1069(95.11.28)호 참조</li> <li>◦ 굴착시는 도로굴착심의된 조정내역에 의거 굴착승인 절차이행후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행시 조치</li> </ul>
비상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38220-96(94.3.28)호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협의 조치</li> </ul>
관악구청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대상 통보요구</li> <li>-도시계획용도지역및 전용농지내역</li> <li>-사실상 농지편입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협의</li> </ul>

부 서 명	협 의 내 용	협 의 내 용
관악구청 (도시정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천7-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봉천택지개발사업지구 남측구간에 B=10M 도로신설요망</li> <li>◦ 사업지구 동측 B=6M 도로구배 S=29.143%로 도시계획 시설기준 규칙의 허용최대구배 S=13%에 초과로 구배 재조정 요망</li> <li>◦ B=6M 1개소, B=8M 2개소에 대하여 종 . 횡단도 및 구조물도 첨부하여 제협의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 추진 예정</li> <li>◦ 기존주거지역을 보호하여야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함에 따라 구배 조정 불가 (보행자용)</li> <li>◦ 별도협의</li> </ul>





# 고 시 (안)

2/ 5,1270 340  
 1/2 분 3L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7호

봉천지구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봉천 택지개발지구내 1 단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개발공사 설계처에 비치하여 열람케 합니다.

1995. 1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봉천지구 1단지 주택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진욱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20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1 봉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단지

라.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대지면적 (㎡)	11,691.50
건축면적 (㎡)	3,840.14
연 면 적 (㎡)	43,110.20
건 폐 율 (%)	32.85
용 적 율 (%)	256.21
사 업 비(천원)	25,640,825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 404세대 15평형 166세대 18평형 238세대
사 업 기 간	1996. 4 ~ 1998. 4